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범위에 간접지배 받는 국내법인 추가〉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59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 ----- ----- -----.
<신 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신 설>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및 국제기구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

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⑫ (생략) ⑬ 제1항의 승인,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신고, 제8항 및 제10항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대상기관은----- ----- ----- ----. ③ ~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의 판단기준, 제2항-----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 제11조의2¹⁾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핵심기술²⁾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³⁾제2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방식으로 해당 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을 가지지 않은 개인,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및 일정한 국제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사전 승인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증가와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국내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법인 등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하에서 해당 국내법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는 현행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

4.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목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과 외국인이 주요 의사결정, 업무집행 또는 대표자·임원 인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등(이하 “간접지배회사”)의 지분을 흡산하여, 그 흡산 결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외국인의 인수·합병 등으로 보아 사전 승인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외국인이 ‘단독 또는 흡산’하여 주식·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간접지배회사가 단독으로 주식·지분을 50% 이상 취득하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인수·합병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법문언상 명확하지 않아, 현행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외국인 범위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 또는 단체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이 단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표 2] 개정안 및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 범위 비교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비고
<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개인	<제1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동일
<제2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u>단체</u> 및 <u>국제기구</u>	<제2호~제5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 일정한 국제기구 (개발금융 또는 대외투자 업무 취급·대행)	유사 (범위 재구성 및 포함 대상 차이)
<제3호> <u>기존 외국인(제1호~제2호)이</u> <u>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u> <u>국내법인 또는 단체</u>	-	신설

※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일부 유형을 통합·신설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의 간접지배 하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에 관한 현행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의 범위가 승인·신고 의무의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그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적용 범위(현행법 제14조⁴⁾ 및 제36조⁵⁾)를 결정하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생략)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간접지배를 받는 국내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규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투자 유인에 미칠 영향 및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의 범위에 직접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기존 입법례에서 외국인과 이에 준하는 대상을 별도로 규율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법인세법」⁶⁾은 과세 주체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전기통신사업법」⁷⁾은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을

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

‘외국인의제법인’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등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하거나, 외국인의제법인과 같은 별도의 개념을 통해 규율 대상을 조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의 범위를 직접 확장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아니면 별도의 개념 설정이나 의제 규정을 통해 규율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외국인의 범위를 정의 규정에서 직접 확장하는 본 개정안의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외국인투자 제한범위에 간접지배를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2건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이들 개정안은 본 개정안과 달리 외국인의 정의나 용어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간접지배의 유형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제한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시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다른 투자기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고⁸⁾, 다른 하나는 투자기업 외에 신탁·조합 등의 투자집합기구를 통해 간접지배하는 경우까지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⁹⁾.

이와 같이 해당 개정안들은 본 개정안과 규율하고자 하는 간접지배의 범위와 이를 포섭하는 방식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의 외국인 범위 설정 방식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이들 개정안의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간접지배의 유형별 규율 범위와 입법 방식이 법률 간에 과도하게 불일치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간접지배 형태를 새롭게 규율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의 범위에 단체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규율 대상의 외연이 현행과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특히, 외국인의 범위는 승인·신고 의무의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그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적용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범위

8) 의안번호 제221037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025. 5. 2. 발의

9) 의안번호 제221202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2025. 8. 6. 발의

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과 달리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단체’를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제기구’ 역시 별도의 한정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시행령에 비해 외국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단체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직까지 포함할 수 있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점에서, 법인 중심으로 규율되어 온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제기구의 경우 현행 시행령은 ‘개발금융 또는 대외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국제기구’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기구 전반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합병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외국인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현행 시행령에서

외국인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문언상 해당 기관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외국인의 범위가 현행에 비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과 같이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외국인의 범위에 포함 또는 배제할지 논의가 필요하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해당 유형을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자구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제11조의2제1항에서 승인 대상 요건을 “대상기관이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인과 신고의 적용 구조가 현행과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음.

즉,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를 승인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에 의하여 해외인수·합병등이 진행되는 사실

을 인정한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하여 승인과 신고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제1항에 “외국인에 의하여”라는 문언이 추가되고 제2항에서는 해당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요건이 서로 대응되지 않거나 뒤바뀌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외국인의 간접지배 구조를 현행 승인·신고 체계에 포함시키려는 데 있는 만큼, 승인 및 신고 의무의 주체와 요건이 현행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의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부칙 제2조¹⁰⁾는 제11조의2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적용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 제목을 ‘경과조치’가 아닌 ‘적용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주식·지분 소유, 임원 선임, 경

10) 부 칙

제2조(해외인수·합병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인수·합병등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 참여 등 ‘지배적 영향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¹⁾이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943호, 2025.06.19. 발의)